

# 산업체위탁교육 운영규정

- |   |   |
|---|---|
| <input type="checkbox"/> 제정 : 2000. 3. 1.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0. 11. 26.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05. 10. 1.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6. 9. 20.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07. 11. 15.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9. 6. 18.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09. 12. 2.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9. 11. 29. |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 및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 교”라한다) 학칙 제17조에 의거하여 본 교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산업체 범위

**제2조(산업체의 범위)**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의 산업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단체나 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 되어 있을 경우, 단체나 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을 경우는 산업체로 본다)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8. 공적증명 소득증빙 제출 가능 산업체(4대 보험가입 산업체는 원천징수영수증, 개인사업자는

공적 소득납세 증빙서류 제출가능)

## 제 3 장 위탁형태 및 학사관리

**제3조(위탁형태)** 위탁교육의 기본 형태는 산업체의 구성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단독위탁 : 산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계열 및 학과별로 위탁
2. 연합위탁 : 둘 이상의 산업체가 연합하여 계열 및 학과별로 위탁

**제4조(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①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교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1/2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은 산업체 임직원 및 본 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교육학과의 개설
2. 위탁 의뢰 산업체에 대한 적부 판정
3. 위탁생의 선발기준
4.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5. 위탁교육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6. 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력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본 교와 산업체의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생 수 및 학급편성)** ① 모집단위별 학생 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대학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학급편성은 40명 이내에서 자유로이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학급 등록인원은 12명 이상이 안 될 경우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별도 학급 편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학과 입학정원의 10%범위 내에서 혼합 편성할 수 있다.

**제6조(설치학과)** 본 교에 설치된 계열 및 학과에 한하여 설치운영한다.

**제7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은 본 교와 위탁산업체가 협의하여 새로이 개발 운영

할 수 있으며, 이때 개발된 교육과정은 본 교에 이미 개설된 계열 또는 학과에 포함되는 교육과정으로 인정하고 유사과정도 본 교 여건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매년 1회 모집단위별로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산업체위탁교육 운영에 반영하고 질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학사관리)** ① 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는 본 교의 학칙, 학칙시행세칙 및 전문대학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른다.

② 위탁생의 학생신분과 자격 등은 정규학생과 동일하며 졸업 시 전문학사 학위를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수여한다.

③ 입학 후 본인의 의사로 해당 산업체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고 입학 취소 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신분변동의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입학 후 부득이 하게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변경된 산업체와 산업체위탁교육을 체결하고, 변경된 산업체의 산업체위탁계약서, 재직증명서(공적증명서 포함)를 재 제출하면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⑤ 입학원서 등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위조)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⑥ 매학기 개강 월 기준(연 2회)에 위탁생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외 4대보험 공적증빙서류 중 택 1,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산업체에서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적 처리할 수 있다.

⑦ 위탁생이 입학한 학과의 별도반이 2개 반 이상일 때, 외부 위탁반, 교내 위탁반 구분없이 위탁반을 변경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9조(교과목 이수)** 교과목 이수는 본 교 학칙에 따른다.

## 제 4 장 선발기준 및 등록금 납부

**제10조(자격 및 선발기준)** ① 위탁생의 자격은 교육과학기술부 시행지침에 의한다.

② 위탁생은 당해 산업체에서 추천하여 본 교에서 별도로 정한 전형절차를 거쳐 입학한다.

③ 위탁생은 본 교에 설치되어 있는 계열 또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으며, 산업체 근무직종과 관련된 학과나 담당업무와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④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가 결정되면

5-0-3 산업체위탁교육 운영규정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모든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⑤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 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및 주경영인의 배우자는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① 교육비는 위탁산업체의 책임 하에 본 교 등록 납부기간에 일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비는 해당 계열 또는 학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요원 활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 5 장 기 타

**제12조(산학협력)** 산업체와 본 교 간 상호 협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2. 산업체가 필요한 기술개발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 연구
3. 정규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기회 제공
4.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사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5.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제13조(산업체의 자원 활용)** ① 산업체내의 강의실 또는 실험실습실이 제공되는 경우 산업현장에서 위탁생만으로 편성된 별도의 학급으로 강의 또는 실험실습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산업체 임직원 중 적격자를 본 교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사를 거쳐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교육계약)** 위탁교육계약은 위탁교육을 의뢰한 산업체의 장과 본 교 총장 간에 체결한다.

**제15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제8조(학사관리) 제7항은 2016년도 2학기 등록기간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 부터 시행한다.